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2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 (1)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2)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3) 규정에 의한(의하여) ⇒ 따른(따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500백만원(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5.25. ~ 6.1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에 따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4조 본문·제5조제2항 본문 중 “각 호”를 “각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4조제2호·제10조제4호·제16조·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제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5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u>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 <u>방자치법」 제142조</u>----- ----- 제43조에 따라----- ----- <u>중소기업육성기금</u>----- ----- -----</p>
<p>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u>기금</u>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 ----- -----<u>중소기업육성기금</u> <u>(이하 “기금”이라 한다)</u>-----</p>
<p><신 설></p>	<p><u>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u></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u>각호</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3. <u>기타</u> 수입금 ②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각 호</u>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u>-----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u>각호</u>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u>기타</u>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p>	<p>제4조(기금의 용도) ----- -----<u>각 호</u> ----- 1. (현행과 같음) 2. <u>그 밖에</u> -----</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u>각호</u>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 2. (생략) ③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u>-----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 ----- ----- ----- -----에 따른 ----- -</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p>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원(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용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p>	<p>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 ----- ----- ----- -----에 따라-----</p>
<p>제9조(용자대상업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p>	<p>제9조(용자대상업체) 제8조의----- -----제2조에 따른----- ----- ----- -----</p>
<p>제10조(용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용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용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p>② (생략)</p>	<p>제10조(용자금의 용도) ①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자금을 대출한다.</p>	<p>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 ----- -----<u>에 따른</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u>범위안에서</u>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u>범위안에서</u>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융자조건) ① ----- -----<u>범위에서</u>----- ----- ② ----- ----- -----<u>범위에서</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u>범위안에서</u>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범위에서</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략)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 4. (생략)</p>	<p>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호의 어느 하나</u>-----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변경사항 통보) ----- -----<u>그 밖에</u>----- ----- ----- -----</p>

현행	개정안
<p>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용자상황, <u>기타</u>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u>매 회계연도마다</u>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u>매 회계연도마다</u>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회계연도마다</u>----- ----- -----</p> <p>④ ----- -----<u>회계연도</u> <u>마다</u>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u>한다.</u></p>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 관련조문 : 제3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군비		500	1,500	1,500	1,400	1,000	5,900
	소계(a)		500	1,500	1,500	1,400	1,000	5,900
세입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500	1,500	1,500	1,400	1,500	5,900

※ 기금 적립목표액 100억원중 46억원 적립(2012년 기준)

3. 관련 의견

- 타군에 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저조하여 조기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작성자 : 경 제 과 장 이 재 영